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6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고동진·권영세·안상훈

박충권 • 강승규 • 박준태

백종헌 · 성일종 · 서일준

박덕흠 · 김성원 · 송석준

최수진 • 주호영 • 조배숙

권성동 · 송언석 · 이달희

최은석 • 박성훈 의원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보호 정책이 미흡하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배"를 "5배"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3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 원"을 "65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년 이하의 징역"을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15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 ① (생 략)	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②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				
액의 <u>3배</u> 를 넘지 아니하는 범	<u>5</u> 删			
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제36조(벌칙) 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u>3년</u> 이상	<u>7년</u>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	<u>65억원</u>			
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	②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				

는	행위-	를 한	자는	・ス	네외한	다)
는	<u>15년</u>	이하	의 징	역	또는	<u>15</u>
<u>억</u>	원 이경	하의 별	벌금에	처	한다.	
3	~ (8)	(생	략)			

 5년 이상의 유기징역-----20

 억원----

 ③ ~ ⑧ (현행과 같음)